

평생교육원 규정

제정 2000. 03. 01 개정 2007. 03. 01
개정 2014. 03. 31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평생학습의 기회제공과 대학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교양 및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대학의 설립이념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)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. 영문명:Th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of Kyungdong University)을 둔다. (개정 2014.03.31.)

제3조 (위치) 이 교육원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91-1번지 경동대학교에 둔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 (원장) ① 이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주임교수 및 교직원) ① 주임교수는 교육원의 일체의 교육에 관한 실무 운영 총괄 및 원생 관리와 지도를 담당하며, 전임교원 중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육원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적정 인원의 교직원과 조교를 둔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 (운영위원회) ① 이 교육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(원장, 주임교수포함)으로 구성하되,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위원의 임기) 원장과 주임교수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 (심의내용)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설치과정

제10조 (학습기간) 이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1조 (학습일수) 이 교육원의 강좌별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 (지원자격) 이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 (선발방법) 이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 (설치과정 등) ① 이 교육원은 일반 또는 교양과정, 자격과정, 특별과정 및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이 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정원 등의 설치과정 기본 편성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③ 설치과정과 학습비는 매학기 모집기간 중 요강으로 공고한다.

제15조 (학습비) ① 이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③ 학습비의 반환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 규정을 준용하며, 반환금액은 <별표1> 학습비 반환금액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제16조 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이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 다만, 자격 과정은 자격증 발행처의 기준에 따른다.

② 수료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강좌 성격에 따라 총장 또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서식은 <별지 서식>을 기준으로 하되 강좌에 따라 개성적인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다.

1. 총장 명의의 수료증

가. 국가 또는 공인된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의 수료자

나. 총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대학의 정책적인 강좌의 수료자

다. 6개월 이상의 지속된 강좌의 수료자

2. 원장 명의의 수료증

가. 위 1호 외의 강좌의 수료자

나. 일반적인 학습 강좌인 경우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

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17조 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18조 (학습자 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이 교육원의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과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즉시 학습자격을 박탈한다.

제19조 (포상) 원장은 학습태도가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, 봉사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6장 회계 및 기타

제20조 (회계연도) 이 교육원 회계연도는 경동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1조 (예산편성) 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학년도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 (수입원) 이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수강료(행정관리비 필수 반영-강좌당 세출예산의 15%)
2. 경동대학교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 시)
4. 기타 수입

제23조 (회계집행) 이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원에서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여건에 따라 총장은 사무국에서 관장토록 할 수 있다.

제24조 (보칙 및 준용)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내용 및 행정처리 방법, 과정별 운영규칙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평생교육원 내규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원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 학습비 반환금액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개강일 및 개강일 이전	수강료 전액
강좌기간의 1/4 이전	수강료의 5/6 해당액
강좌기간의 1/4부터 2/4 전까지	수강료의 2/3 해당액
강좌기간의 2/4부터 3/4 전까지	수강료의 1/3 해당액
강좌기간의 3/4 이후	반환하지 않음

<별지 서식>

평생 제00-00호

수료증

성명 : 000

생년월일 : 00. 0. 0

위 사람은 경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()과정(교육기간 : 0000.00.00 ~ 0000.00.00)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.

0000년 00월 00일

경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(학위 명기) 성명

위의 사실을 인정함.

0000년 00월 00일

경동대학교 총장 (학위 명기) 성명